

근로기준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<u>7. “1주”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</u></p>
<p>1.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·단체와 그 기관·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·단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: 2018년 7월 1일(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)</p> <p>2.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20년 1월 1일</p> <p>3.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21년 7월 1일</p>	
<p>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</p> <p><신 설></p>	<p>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</p> <p><u>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</u></p> <p><u>2. 대상 근로자의 범위</u></p> <p><u>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
<p>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
<p>제55조(휴일)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<u>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55조(휴일)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(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)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.</u></p>

<p>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1.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·단체와 그 기관·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·단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: 2020년 1월 1일</p> <p>2.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21년 1월 1일</p> <p>3.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22년 1월 1일</p>	
<p>제55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 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·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)와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)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·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50</p> <p>2.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</p> <p><u>③ 사용자는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
<p>제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(週)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운수업, 물품 판매 및 보관업, 금융보험업</p> <p>2. 영화 제작 및 흥행업, 통신업, 교육연구</p>	<p>제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) ①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(週)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</p>

<p>및 조사 사업, 광고업</p> <p>3. 의료 및 위생 사업,接客업, 소각 및 청소업, 이용업</p> <p>4.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</p>	<p>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. 다만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(路線)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.</u></p> <p><u>2. 수상운송업</u></p> <p><u>3. 항공운송업</u></p> <p><u>4.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</u></p> <p><u>5. 보건의업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.</u></p>
<p>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
<p>제69조(근로시간)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71조(시간외근로)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, 1주일에 6시간,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.</p> <p>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9조(근로시간)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<u>1주에 35시간</u>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<u>1주에 5시간</u>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71조(시간외근로)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, <u>1주에 6시간</u>,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.</p> <p>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<u>제59조제2항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
<p>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3조(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)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한다.</p>	